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42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 휴게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안 제55조의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주체인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에 대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함.

나.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안 제66조의4 신설)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를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로 하고,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등을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부대시설로 정함.

다. 휴게시설 운영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안 제66조의5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으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참여 경제주체로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55조의3제2항 중 “사업주 외의 자”를 “사업주 외의 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6조의4 및 제6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4(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를 말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3.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제66조의5(휴게시설의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법 제9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별표 제2호더목 및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9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 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를 말한다.	제3조(융자업무취급기관)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 마을금고와 그 <u>연합회</u>	5. ----- <u>중앙회</u>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공단은 법 제86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에 법 제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에 100에 해당하는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의3(공동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 가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u>단 서 신설</u> >	2. ----- ----- <u>. 다만, 「국 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의2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의 참여 경제주체로서 「중견</u>

② 공단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이 법 제8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신설>

<신설>

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② -----

-----사업주 외의 자(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의4(휴게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전단에서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무”란 소화물배송, 대리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를 말한다.

② 법 제95조의2제2항제4호 후단에서 “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
2.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신 설>

3. 남녀가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제66조의5(휴게시설의 운영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따라 법 제95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3.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단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연 락 처	(044) 202 - 7559